전라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

제4차 신규 입주업체 모집 안내

도내 성장가능성이 높은 (예비)창업자에게 공간 제공과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 대상자를 모집하고자 함

1 모집개요

○ 시 설 명 : 전라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

○ 모집대상 : 전라북도 거주 예비창업자 및 창업 6년 미만 사업자

- 예비창업자 :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입주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
- 창업기업 : 공고일 기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일이 6년 이내인 기업

* 창업 6년 미만이란 유효한 사업자 중 최초의 사업자 기준으로 함

* 사업자등록증상 같은 업태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일 경우 입주 제한

○ 모집기간 : 2023. 6. 19.(월) ~ 7. 14.(금)

○ 모집규모 : 00개

○ 입주면적 : 14㎡(3.6평), 30㎡(10평/고용인원 필요)

○ 접수방법 및 문의처

- E-Mail 접수 : LBY@jbba.kr ***gmail 수신 불가**
- 전 화 : 소상공인희망센터 063)717-1306

2 선정개요

○ 선정절차 : 1차 서류평가(결격 여부) → 2차 대면평가

- 대면평가 : 업체 소개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 총 15분 정도

1) 별도의 자료 준비 및 PT발표 없음

2) 대면평가 평균 70점 이하 미선정

3) 대표자 본인 참석 필수

○ 평가요소 : 창업아이템의 적정성, 성장가능성, 경영능력 등

○ 추진일정

~7. 14.(금)限	→	7. 17.(월)	→	7. 19.(수)	→	7. 21.(금)
신청접수		서류평가(개별통보)		대면평가		최종결과 발표

3 시설개요

○ 시 설 명 : 전라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

○ 소 재 지 :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45-6

○ 입주기간 : 1년(성과평가 후 1년 단위 연장, 최대 5년 보육)

* 입주기간은 사업자등록일 기준 최대 7년을 넘을 수 없음(예: 창업 6년차는 1년 입주 가능)

○ 보 육 실

구 분	면 적	임대료	전기료	비 고
희망관	14㎡(3.6평)	55천원/월 660천원/년	50kw 무료제공	00개
미래관	30㎡(10평)	110천원/월 1,320천원/년	80kw 무료제공	00개

- 기본제공 : 인터넷, 무인경비, 냉난방, 사무집기, 전기(일정량) 등

* 전기 무상제공량 소진 시 추가 사용량 실비 부과

- 부대시설 : 화상회의실, 제품촬영실, 회의실, 공용창고 등
- 임 대 료 : 계약진행 시 1년 임대료(일시납)

4 입주 제외 대상
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
- 도박, 투기 등 사행성 조장업종 및 퇴폐, 불법, 불건전업종
- 금융업, 보험업, 주점업, 숙박업, 유흥업
- 소음, 진동, 폐수, 악취 등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업종
- 창업보육센터는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 5[별표1]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「의료기기법」 제17조 및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및 식품영업 허가 불가(건축물 용도변경 불가)
- 소상공인희망센터 입주 이력이 있는 자 또는 가족 및 지인의 사업자를 이용한 대리 입주 불가
- 기타 소상공인희망센터 설립 취지 및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5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업체선정 또는 계약 후 자격 부적격 또는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취소 및 계약을 철회할 수 있음
- 입주 지정일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거나 입주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이전이 되지 않을 시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
- 예비창업자는 입주 1개월 이내 창업을 완료하여야 함

6 신청 및 제출서류

* 예비창업자 : 공고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한 번도 없는 자

* 기 창업자 : 공고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한 번 이상 이력이 있는 자

구 분	제출서류
예비창업자 제출서류	• [서식1] 입주신청서
	• [서식2] 사업계획서
	• [서식3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공 동의서
	• 대표자 등본 또는 초본 1부
	• 사실증명 1부
기 창업자 제출서류	• [서식1] 입주신청서
	• [서식2] 사업계획서
	• [서식3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공 동의서
	• 대표자 등본 또는 초본 1부
	• 사실증명 1부
	• 사업자등록증 1부
	• 폐업사실증명(해당자)
	•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
	• 4대보험 가입 확인서(해당자: 30㎡ 면적 신청자)
	• 지식재산권, 벤처기업인증, 수상내역 등 성과자료(해당자)

○ 사실증명

- 총사업 등록 내역 확인
- 발급방법 :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인터넷 발급
- 인터넷 발급 절차 : 홈택스 ▶ 민원증명 ▶ 사실증명신청 ▶ 사실증명(총사업등록내역)

○ 폐업사실증명

- 사실증명에 나오는 폐업 회차만큼 제출
- 발급방법 :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인터넷 발급
- 인터넷 발급 절차 : 홈택스 ▶ 민원증명 ▶ 민원증명발급신청 ▶ 폐업사실증명
- 폐업사실이 없으면 생략

※ 공고일(2023. 6. 19.)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

[예시1] 예비창업자 - 사실증명(사업자 미등록내역)

국세청 nts.go.kr

발 급 번 호	사 실 증 명		처 리 기 간
9801-701			즉 시
성 명(대 표 자)		상 호(법 인 명)	
주민(법인)등록번호	*******	사업자등록번호	
주 소 지 / 사 업 장	전라북도 전주시 **** **** **** ****		
증명 발고자 하는 내용	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.		

위와 같이 증명합니다.

※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접수번호	
담당부서	민원봉사실
담 당 자	
연 락 처	

2020 년 3 월 13 일

전 주 세 무 서 장 (인)

국세청 국세청

* 본 증명의 위·변조 여부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「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모바일 홈택스 > 민원증명(증명발급) > 민원증명 원본확인」 에서 발급번호로 확인, 또는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
(공문서를 위·변조하거나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.)
* 본 증명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대법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증명서입니다.

[예시2] 창업자 - 사실증명(총사업내역 사실 확인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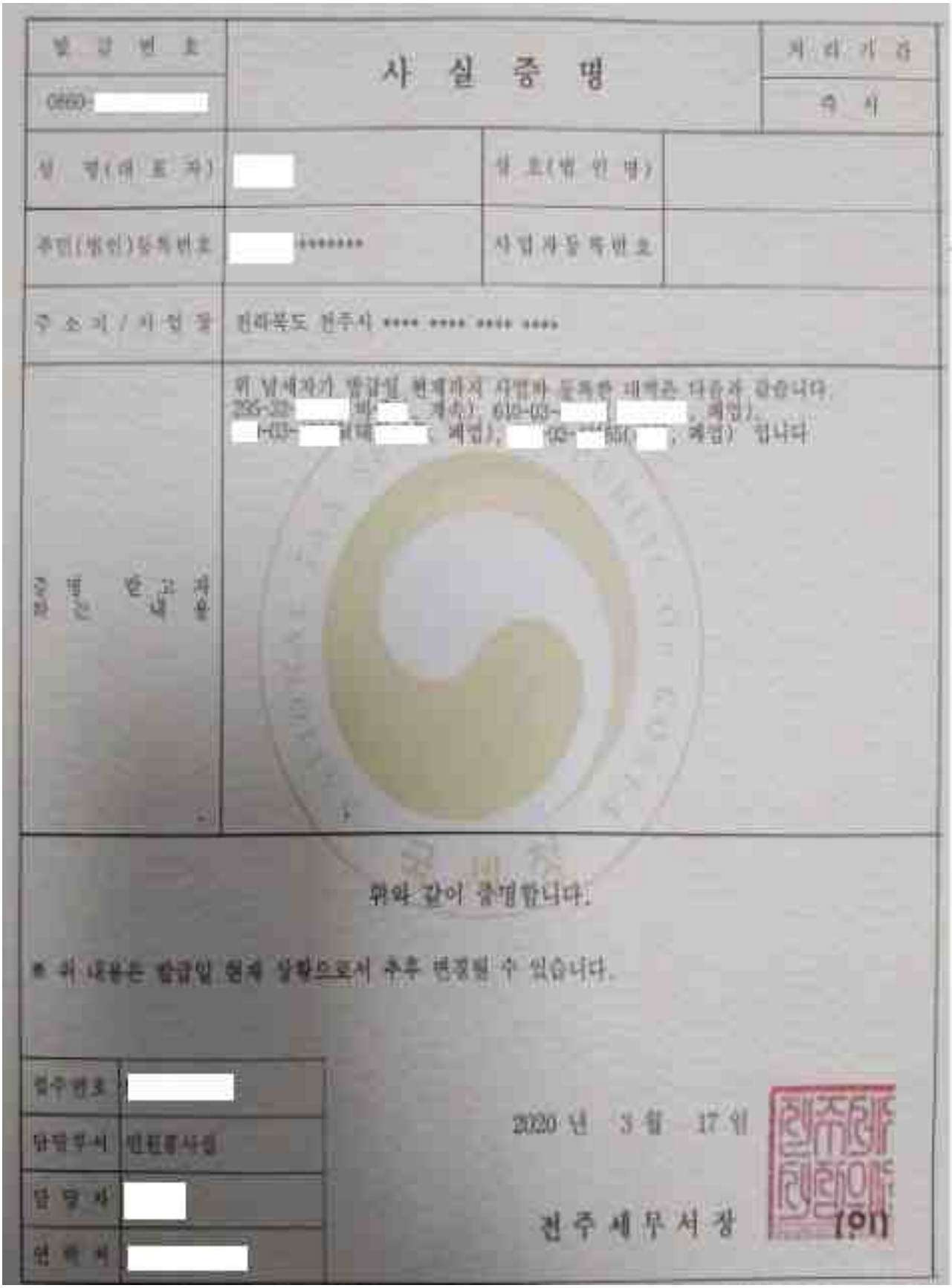

발급번호	사 실 증 명	처리기간
0860-[redacted]		즉 시

성 명(대표자)	[redacted]	상 호(법인명)	
주민(법인)등록번호	[redacted]*******	사업자등록번호	
주소지/사업장	전라북도 전주시 **** **** **** ****		
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	위 납세자가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 등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 295-32-[redacted] 비[redacted] 계속) 610-03-[redacted] [redacted], 폐업), [redacted]-03-[redacted] 실태[redacted] (폐업), [redacted]-02-[redacted]55([redacted], 폐업) 입니다		

위와 같이 증명합니다.

※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접수번호	[redacted]
담당부서	민원봉사실
담당자	[redacted]
연락처	[redacted]

2020 년 3 월 17 일

전주세무서장

[예시3] 폐업자 - 폐업사실증명(폐업사실 확인용)

※ 폐업 이력만큼 폐업사실증명 첨부

예) 폐업 이력 3회 시 폐업사실증명 3부 첨부

(1 / 1)

발급번호	폐 업 사 실 증 명 (일반과세자)	처리기간 즉시

상호(법인명)	
사업자등록번호	
성명(대표자)	
주민(법인)등록번호	
사업장소재지	
업태	서비스
종목	
개업일	2016년 11월 28일
휴업기간	
폐업일	2017년 06월 19일

공동사업자	성명(법인명)	주민(사업자)등록번호
	해당사항이 없습니다.	

위와 같이 증명합니다.

※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2018 년 8 월 8 일

접수번호	
담당부서	
담당자	
연락처	

북 전 주 세 무 서 장 (인)

국세청

* 본 증명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의 「민원증명」 서비스에서 「민원증명 원본확인」 메뉴를 통해 문서발급번호로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하거나,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 확인해 주십시오. 다만, 문서발급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합니다.
* 본 증명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증명서입니다.